록크의 정치론에 대한 분석평가

김 명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과학자들이 선행철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416페지) 영국경험론철학자인 록크(1632-1704)의 정치론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평가하는것은 근대서양정치리론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는데서 의의가 있다.

그의 정치론은 《통치 2론》에서 전개되고있다.

록크의 정치론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왕권신수설》에 대한 견해이다.

록크는 당시 로버트 필머와 그 신봉자들의 《왕권신수설》을 비판하였다.

필머는 저서 《빠도리아가》(1630)에서 전통적인 제한왕정론뿐아니라 당시 새롭게 제기된 사회개혁론도 반대하고 그 전제를 이루는 인간의 자연적자유라는 견해를 버릴것을 주장하면서 왕권의 절대성을 기초지었다. 필머의 《왕권신수설》에 의하면 왕권과 가정에서의 부권은 동일하며 따라서 왕권세습은 가정에서의 부권과 동일하다.

록크는 필머의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통치권과 부권을 분리시켰다.

록크에 의하면 정치적권력과 부권이라는 이 두개의 권력은 완전히 별개의것, 서로 분리된것이며 완전히 다른 근거에 토대하여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부여된것이다. 부권이란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력이며 이것이 있게 되는 리유는 아이들이 유약하고 무력하기때문이다. 이 권한도 아이들의 생명과 소유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법이외의어떠한것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이처럼 부권에 제한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치권과 명백히 갈라놓은 록크는 절대군주 제는 본질상 정치방식으로 될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절대군주제라는것은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통치형태라고 간주되지만 실지는 시민적통치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것이다.》라고 썼다.

록크의 《왕권신수설》에 대한 비판은 미숙한것이였으나 봉건왕권의 신성함과 세습제의 리론적기초를 부정한 반봉건사상인것으로 하여 당시의 조건에서는 의의가 있는것이였다.

록크의 정치론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소유권의 원리에 대한 견해이다.

록크의 소유권의 원리는 소유권개념을 사용하여 자연적자유의 주장을 보다 명확한 형태로 재정식화한것이다.

그에 의하면 소유권이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배타적지배권이라고 할수 있다. 모든 인 간은 본래 자연적으로 자기의 인신과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그것은 각자의 생 명, 자유, 재산이 본래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소유물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소유권개념의 기초에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지배할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 즉 개인이 설정되여있고 그 행위의 주체는 자기의 리성을 행사하여 자기 행위를 법의 범위내에 머물게 할수 있다는것이다.

록크는 소유권에 대하여 모든 인간은 본래 자연적으로 자신의 인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인신소유권과 모든 인간은 본래 자연적으로 자기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다는 재산소유권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자신의 인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다 자신의 로동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의 로동력을 자연의 대상에 《혼합》 또는 《결합》하는것에 의하여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수 있다. 타인에게도 충분히 동일한 자원이 남아있으면 타인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획득방법의 정당성은 명백하다.

록크는 로동은 노력과 고통을 동반하기때문에 보수가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기초 하여 로동에서 땀을 흘린 인간만이 로동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록크는 이와 함께 인간은 로동에 의하여 사물의 《가치》의 대부분을 만들어낸다는 주장과 로동에 의한 재산소유권의 획득은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에 토대하여 로동에 의한 재산소유권획득의 정당성을 보충하였다.

록크는 재산소유권의 획득과 보존에 관해서는 타자에로의 위험과 회피라는 제한이외에도 《부패하기 전에 사용하여 몇개의 방식으로 생활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만》획득하고 보존하면 좋다는 제한 즉 《부패금지와 생산적활용》의 제한을 설정하였다.

록크는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물을 자유로 교환하는것을 앞의 제한내에서 인정하면서다시 사람들이 화폐의 사용에 의하여 직접 자신과 가족이 소비할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고 재산을 불평등한 형태로 확대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였다. 이때 그가 념두에 둔것은 토지소유자가 자기와 가족이 경작한 토지의 잉여생산물을 팔고 화폐를 축적하며 그후에 사유지를 확대하고 로동자를 고용하여 다시 교역에 의하여 토지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록크는 로동자의 고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마치도 교역에 있는 화폐사용만으로 소유가 확대되는것처럼 쓰고 그 화폐사용의 결과로 생긴 토지의 불평등한 소유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그릇된 주장을 하였다.

록크의 주장은 물론 그릇된 론의였지만 당시 조건에서는 절대권력과 자의적인 정치 권력에 대항할수 있는 재산소유권론이였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국왕이 모든 토지와 생산 수단에 대하여 절대적지배권을 가진다는 필머의 소유론과 절대적주권자에 의한 분배가 시민들사이에 배타적소유권을 확증한다는 홉스의 소유권론에 대항한것이였다.

록크의 소유권론에 의하여 재산소유자들이 설정되고 재산에 대한 지배가 허락됨으로 써 자유주의정치철학의 토대가 세워지게 되였다.

록크의 소유권론은 사적소유옹호론이다. 사적소유가 개인주의를 낳으며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가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낳는것은 필연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재산소유권론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록크의 정치론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동의의 원리에 대한 견해이다.

록크의 동의의 원리란 각자에게 《동의》를 주지 않으면 정치적권리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것이다.

록크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연상태에서 가지게 된 인신소유권과 그곳에서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치사회를 형성하고 그에 가입한다. 동의는 정치적권력(정당한 정치권력)과 정치적의무, 정치적권위에로의 복종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록크는 이러한 동의의 원리를 지지하는 《동의리론》을 전개하는데서 자유와 자발성을 핵으로 하는 《동의》개념뿐아니라 구속성을 본질로 하는 《약속》의 모든 개념 즉《합의》,《협약》,《협정》도 병행시켰다.

록크는 각자의 동의가 정치적권위와 정치적의무의 발생에 필요한가를 론하면서 자기 몸에 관계하는 류형과 몸의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본인의 동의 가 없으면 타인에 의한 지배를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그는 소유개념 을 기초로 하여 자기 결정의 존중과 동의에 토대한 배타성의 해제를 주장하였다.

록크는 동의리론을 전개하면서 예상되는 두개의 비판 즉 동의와 계약으로 정부를 수립한 력사적실례는 없다는 비판과 모든 인간이 정부밑에서 살기때문에 그 정부에 복종할 것이라는 비판에 반론하였다.

그는 자발적동의와 대치되는 폭력에 의한 《정복》을 정치적의무의 근거로 하는 설도 비판하였다.

이것은 그가 신흥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의 대변자로서 봉건절대주의에 대한 비판적 립장에 서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는 동의의 개념과 약속개념을 함께 씀으로써 무엇이 의무를 발생시키는가를 애매 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문제점으로 되고있는것은 그의 동의리론이 철저히 개인주의적립 장에서 제기된것이며 관념론적으로 론의된 그릇된것이라는것이다.

국가의 발생은 사회성원들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계급분화와 관계되여있는것이다. 국가는 사적소유의 발생과 함께 사회가 적대되는 계급들로 분렬되고 그들 간의 치렬한 투쟁이 일어나면서 력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즉 생산수단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유리한 경제적처지를 옹호할수 있는 일정한 권력적조직체로서 국가를 만든것이다.

록크의 정치론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정의의 원리에 대한 견해이다.

록크의 정의의 원리란 정치적권력이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록크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들의 소유권을 비롯한 권리들을 공평한 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의 침해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의의 원리는 정치적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여서는 안된다는 원리와 쌍을 이룬다.

록크에 의하면 정의실현의 의무는 국가의 최고권력을 가진 립법부와 그 임무를 맡은 기관에 부과되여있다. 립법부는 갑자기 세워져 자의적인 명령에 의하여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지 않고 정의를 행사하고 공포된 법 및 권한을 부여받은 군중의 재판관에 의하여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확정할 의무를 지고있다.

록크의 정의의 원리는 통치자에게 《평등》또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추구시키려는 것이였다.

그러나 록크가 추구한 정의란 봉건절대주의에 대치하여 신흥부르죠아지가 들고나온 《평등》또는 《공정성》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당시의 조건에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었지 만 계급사회에서는 실현불가능한것에 지나지 않았다.

록크의 정의의 원리는 통치자에게 현실적평등과 공정성을 추구하게 하려는것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계급사회에서 피착취자들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것이다. 록크에

의하면 피착취계급의 생존권은 부자들의 《자애》에 맡겨질수밖에 없게 된다.

록크의 정치론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사람들이 저항권, 혁명권, 《하늘에로의 호소》의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이다.

록크가 말하는 저항권이란 특정한 통치자 즉 국왕에게 저항하는 권리이며 혁명권이란 새로운 립법부를 만들고 새 정부를 수립할 권리이다. 그리고 《하늘에로의 호소》의 권리란 전쟁상태가 발생한 때에만 권리침해의 피해자인 개인 혹은 집단이 일어나는 일을할수 있는 신의 법정에로의 호소이다.

록크에 의하면 사람들의 저항권, 혁명권, 《하늘에로의 호소》의 권리는 정치적권력이 그 목적을 이를수 없는 기능장애에 빠진 경우에 발동되는 권리로서 실력행사를 동반한다. 특히 록크는 혁명권을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의하여 발동되는 원리로 생각하고있었다. 물론 록크는 저항권과 《하늘에로의 호소》의 원리에 관해서는 그 권리의 행사자가 때로는 집단, 때로는 개인이라고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록크가 절대주의통치에 대한 반항권을 어느 정도 시인하여나섰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록크의 저항권, 혁명권, 《하늘에로의 호소》의 권리에 대한 주장은 신흥부르죠 아지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우기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 자주적 권리와도 련결시키지도 못한것이였다.